
민북 등 4개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2019. 11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농업, 생활, 환경용수 등)를 확보·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용수공급·안전영농기반 구축과 농어촌 환경개선도모
-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 여유수자원 효율적 배분·활용, 지역·수계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 소규모 수리시설 통합·재편을 통한 안정적인 용수공급, 안전 영농기반구축

1.2 실시근거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2항 [별표2]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비고
파. 특정지역의 개발	3)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계획의 확정 전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준비서를 작성함.

1.3 계획의 내용

가. 계 획 명 : 민북 등 4개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나.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진동면 등 4개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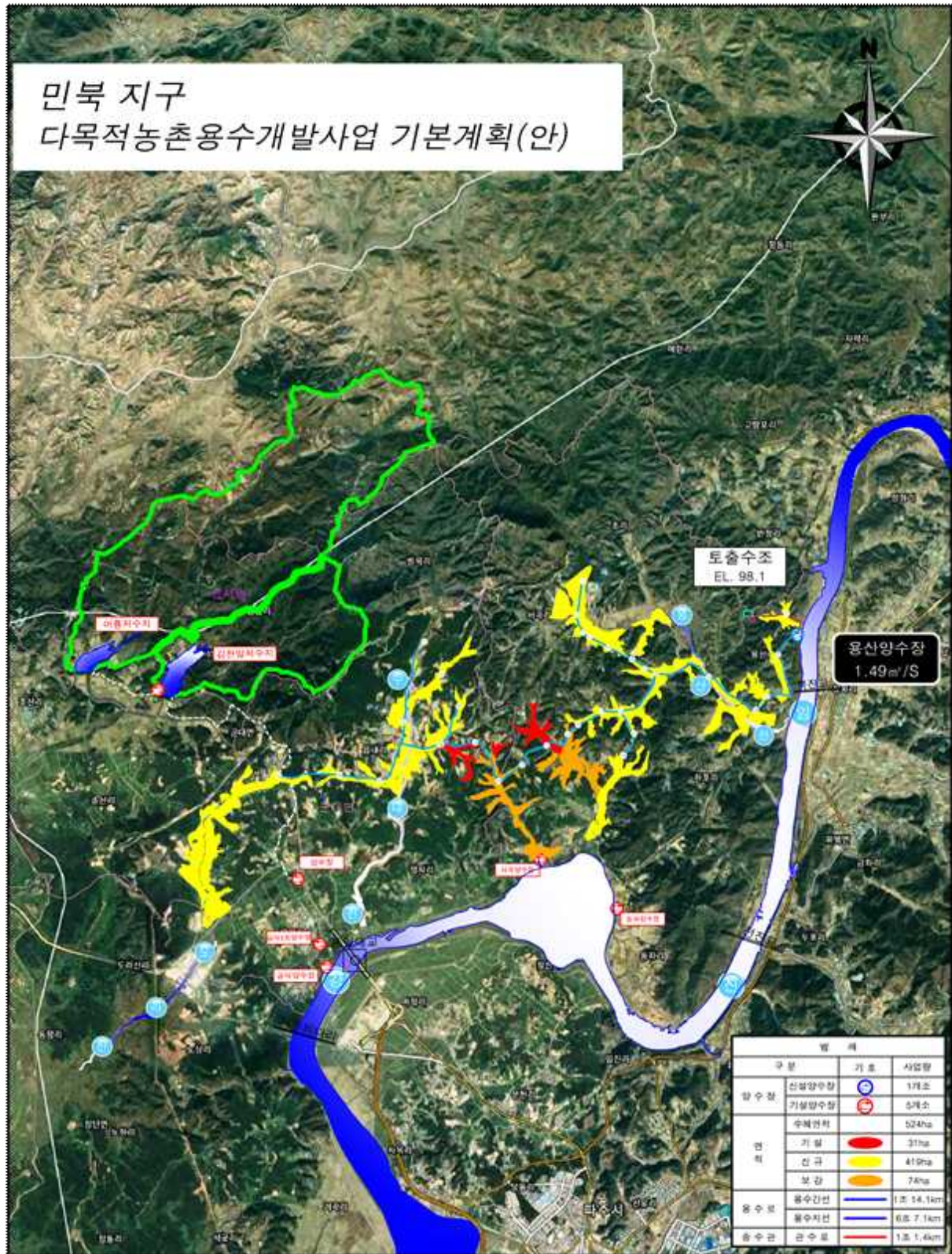
다. 계획기간 : 2019년 ~ 2020년

라. 사업시행(예정)자 : 한국농어촌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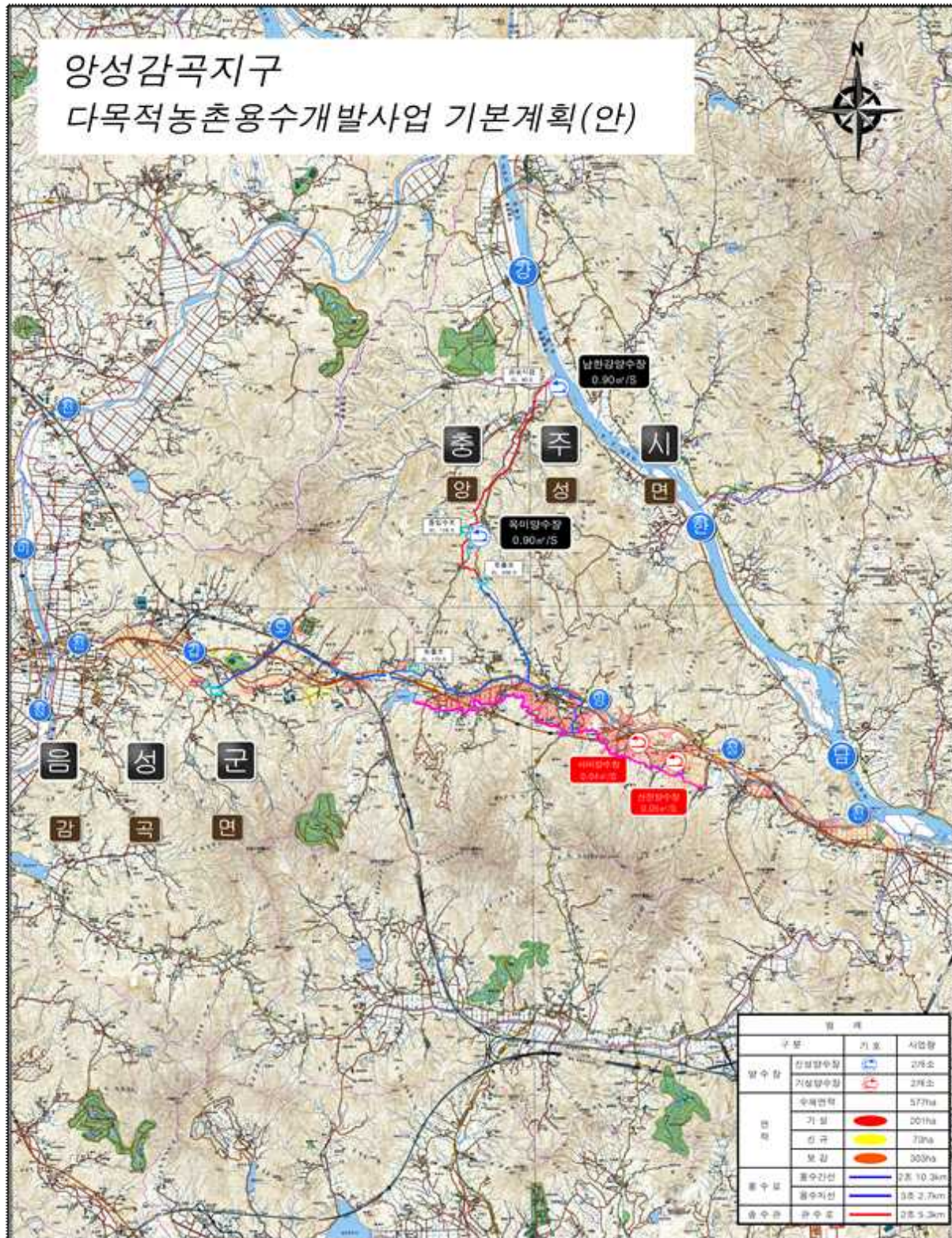
마. 기본계획 수립자 : 농림축산식품부

바. 주요 시설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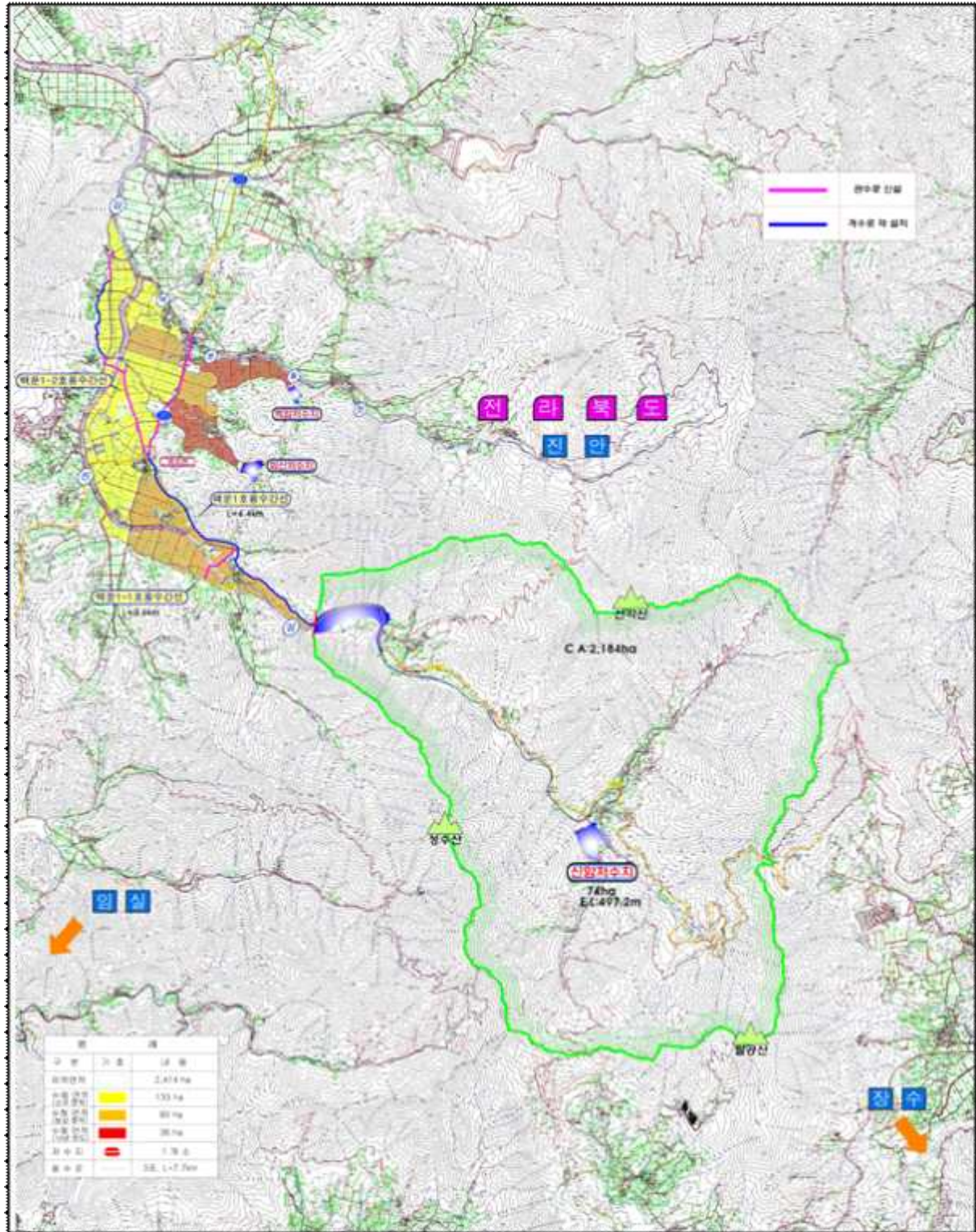
사업명	지구명	위 치	주요 시설 계획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민 북	경기 파주시 군내면·진동면	·수혜면적 : 524ha - 신규 419ha, 보강 74ha, 기설 31ha ·양수장 1개소(신설) - 용산양수장(Q = 1.49m ³ /s) ·송수관로 : 1조 1,415m ·용수로 : 6조 21,144m
	반 송	전북 진안군 백운면	·수혜면적 : 259ha - 신규 133ha, 보강 90ha, 기설 36ha ·저수지 1개소(신설) - 유역면적 2,414ha, H=20m, L=200m - 총저수량 : 1,819천m ³ , 유효저수량 : 1,784천m ³ ·용수로 : 3조 7,700m
	양 성 감 곡	충북 충주시 양성면 충북 음성군 감곡면	·수혜면적 : 577ha - 신규 73ha, 보강 303ha, 기설 201ha ·양수장 2개소(신설) - 남한강양수장(Q = 0.90m ³ /s) - 목미양수장(Q = 0.90m ³ /s) ·송수관로 : 2조 5,300m ·용수로 : 5조 13,000m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천 안 북 부	충남 천안시 성환읍· 직산읍·입장면 충남 아산시 음봉면	·수혜면적 : 1,259ha - 신규 -, 보강 713ha, 기설 546ha ·양수장 3개소(신설) - 제1호양수장(Q = 1.07m ³ /s) - 제2호양수장(Q = 0.51m ³ /s) - 제3호양수장(Q = 0.35m ³ /s) ·송수관로 : 6조 22,9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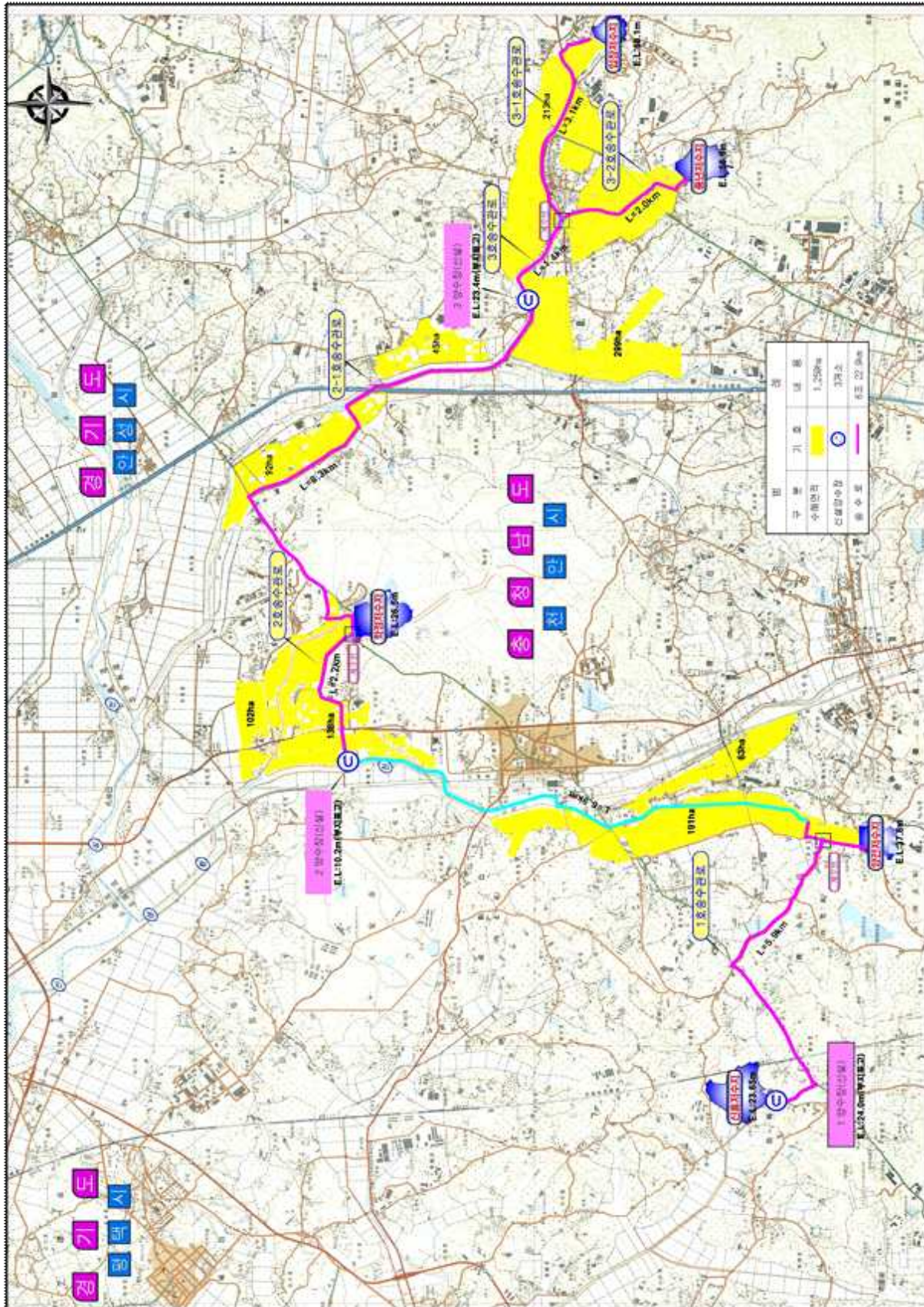
〈그림 1-1〉 민북지구



〈그림 1-2〉 양성감곡지구



<그림 1-3> 반송지구



<그림 1-4> 전안북부지구

1.4 추진경위

가. 추진경위

- 2019. 05. 17 : 민북 등 4개지구 기본조사 대상지 현황제출
(한국농어촌공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2019. 06. 20 : 민북 등 4개지구 기본조사 시행 지시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 2019. 07. : 민북 등 4개지구 기본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
(한국농어촌공사)
- 2019. 10. ~ 11.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농림축산식품부)

나. 향후계획

- 2019. 11. ~ 12. : 결정내용 공개
- 2019. 12. ~ 2020. 01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의견수렴
- 2020. 0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요청(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개요

2.1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제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 범위 등의 결정)

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 심 의 방 법 : 서면심의
- 심 의 일 시 : 2019. 10. 17 ~ 2019. 11. 15
- 심의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과장
- 심 의 위 원 : 협의기관(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등 21명

연번	구 분	소 속 / 부 서	성 명	비 고
1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박○○	계획수립기관 (공통)
2	위 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조○○	계획수립기관 (공통)
3	위 원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정○○	협의기관 (공통)
4	위 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	협의기관 추천 (공통)
5	위 원	(주)우리이엔씨(환경영향평가사)	김○○	환경전문가 (공통)
	위 원	(주)정원평가기술단 (환경영향평가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양○○	환경전문가 (공통)

연번	구 분	소속 / 부서(연락처)	성 명	비 고
6	위 원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김○○	민북지구
	위 원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김○○	천안북부지구
	위 원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김○○	양성·감곡지구
	위 원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전○○	반송지구
7	위 원	경기도 파주시 환경보전과	손○○	민북지구
	위 원	충청남도 천안시 환경정책과	이○○	천안북부지구
		충청남도 아산시 환경보전과	장○○	
	위 원	충청북도 충주시 환경수자원과	최○○	양성·감곡지구
		충청북도 음성군 환경과	조○○	
	위 원	전라북도 진안군 환경과	장○○	반송지구
8	위 원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이○○	민북지구
	위 원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독정2리	민○○	천안북부지구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쌍암2리	이○○	
	위 원	충청북도 충주시 양성면 목미리	홍○○	양성·감곡지구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곡리	신○○	
	위 원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반송리	김○○	반송지구

제3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내용

3.1 대상지역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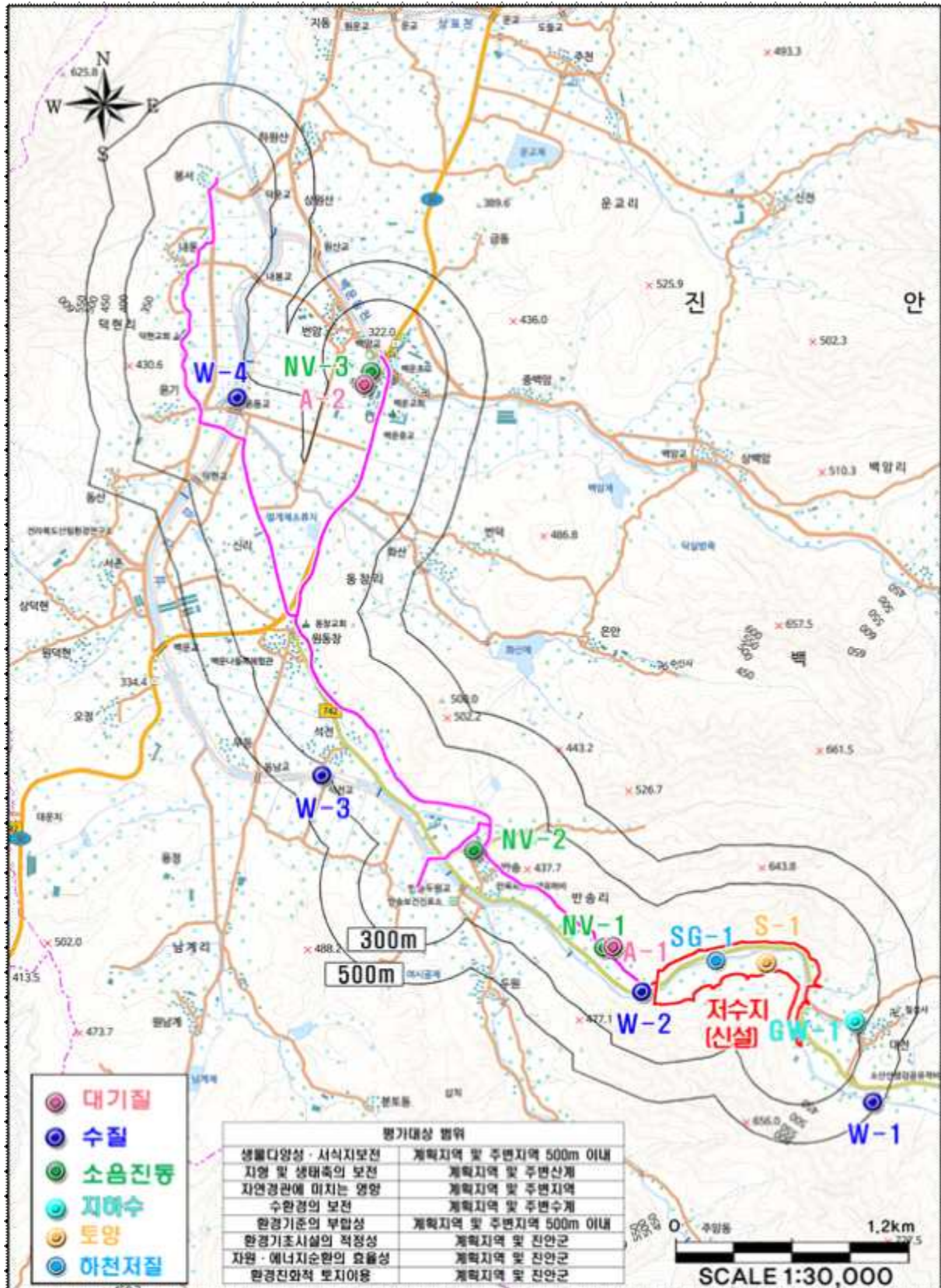
- 본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및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의 계획적정성 및 입지의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평가 대상지역은 계획지구의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으로 선정함.
-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 1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대기질, 악취, 소음·진동), 2013, 환경부」 등을 참고하여 설정함.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선정 기준		평가대상 지역	비고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계획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계획지역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의 비교 및 입지 측면에서 대안 비교·검토		계획지역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 공사에 따른 동식물의 서식지 훼손 발생 지역	계획지역 주변 0.5km 이내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 형	▶ 절·성토 등으로 인한 지형변화 및 사면발생, 토량이동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토 양	▶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양환경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 지형변화로 인한 경관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수환경의 보전	수 질	▶ 절·성토 등 지형변화로 인한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역 (반송지구 : 저수지 신설로 수질 변화)	계획지역 및 주변수계	
		수 리 수 문	▶ 가뭄피해현황 및 농촌용수공급 현황 등을 기초한 물수지분석 (반송지구 : 저수지 신설로 수문환경 변화)	계획지역 및 주변수계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대기질	▶ 공사시 장비가동 및 토사이동에 따른 대기질 영향	계획지역 주변 0.5km 이내	
		소 음 진 동	▶ 공사시 장비가동 및 토사이동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계획지역 주변 0.5km 이내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공사시 폐기물 발생 예측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토지이용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 예측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인구 및 주거	▶ 운영시 인구·주거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협의회 의견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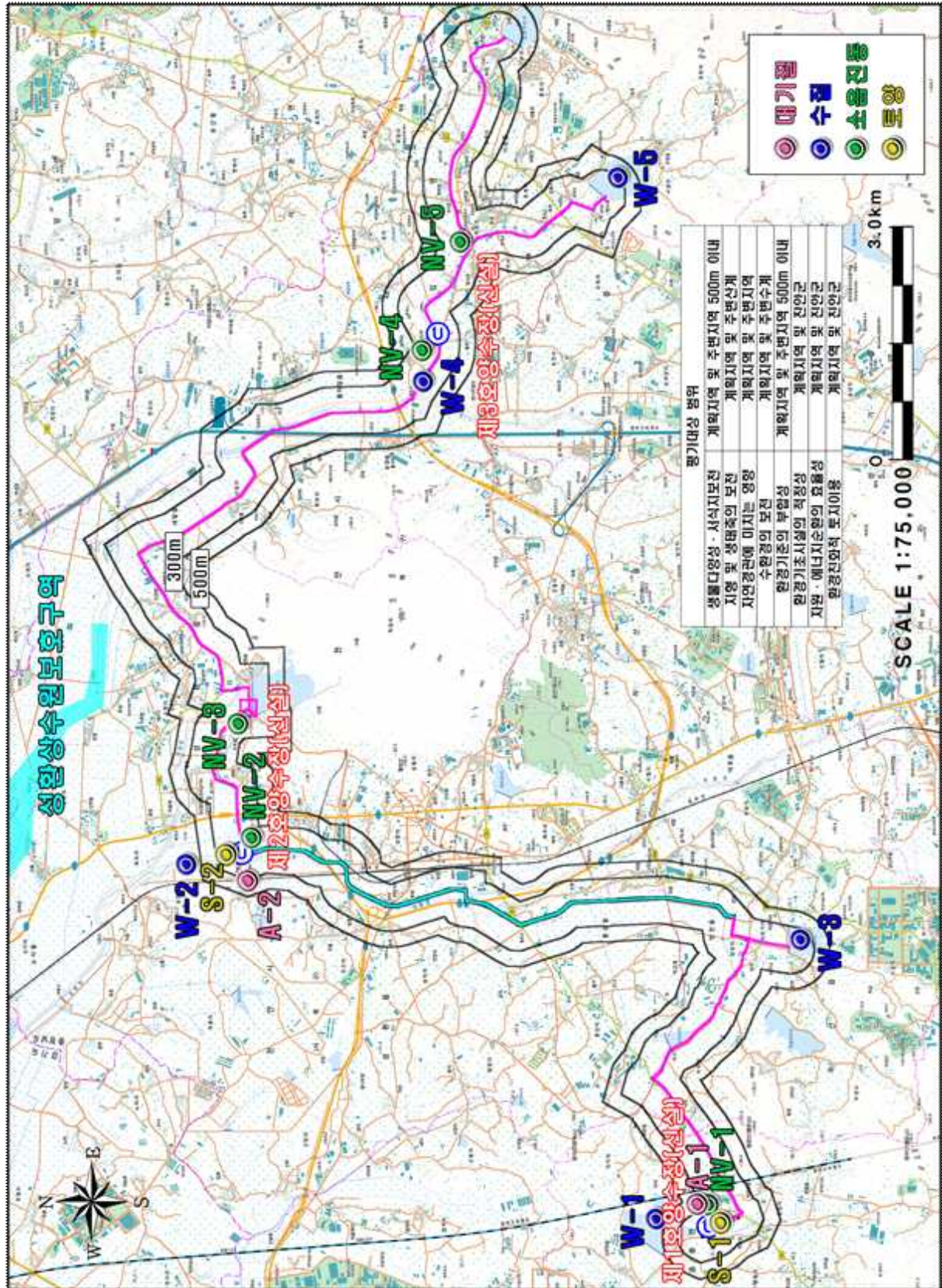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그림 3-3> 반송지구 대상지역 설정도



<그림 3-4> 천안북부지구 대상지역 설정도

3.2 대안의 설정

- "대안"이라 함은 환경적 목표와 기준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말함.
- 계획의 대안으로는 다음 표에 제시된 대안의 종류 중 계획비교와 수단·방법 대안을 선정함.

〈표 3.2-1〉 대안선정

대안종류	대안선정방법	선정여부
계획비교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수단·방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수요·공급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입지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시기·순서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기타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3.3 평가항목의 선정

◦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환경영향 분석을 위하여 금회 계획으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평가 항목으로 설정함.

－ 검토항목 설정 참고문헌：

-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2018.12.12, 환경부고시 제2018-205」
- ▷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 2017.12, 환경부」

〈표 3.3-1〉 환경영향요소 추출

구 분	검토항목	환경영향요소	영향수준
검 토 항 목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 · 분석의 적정성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일관 정도 ◦계획 수립 전 · 후의 영향 정도 +++ +++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 다양성 · 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자연환경의 보전 －동 · 식물 영향 －지형변화 및 생태축 영향 －경관 저해 및 훼손 정도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의 영향 여부 ++ + + ++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자원 · 에너지순환의 효율성	◦생활환경의 안정성 －계획수립시 환경기준의 유지 · 달성 여부 －자원·에너지의 효율적 순환 여부 ++ + +
		◦사회 · 경제환경과의 조화성 －친환경적 토지이용 －인구 및 주거	◦사회 · 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인구·주거의 변화 예측 ++ +

주) 환경영향요소에 중요도에 따라 “+” : 영향미미, “++” : 영향보통, “+++” : 영향높음 등으로 구분함

〈표 3.3-2〉 중점 및 일반검토항목의 선정

구 분	검토대상항목
중점검토항목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지형·지질, 토양)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수질, 수리·수문) ▪환경기준의 부합성(대기질, 소음·진동)
일반검토항목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인구 및 주거

〈표 3.3-3〉 평가 범위·방법 선정

구 분		평 가 범 위	평 가 방 법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계획지역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계획지역	◦계획의 비교 및 입지 측면에서 설정된 대안을 환경적 측면에서 비교·분석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사업시행으로 인한 생물서식공간의 변화에 따른 육상 및 육수동식물상의 변화 예상 -육상 및 육수 동·식물 분포현황 및 변화예측 -종 분포, 식생, 녹지자연도 변화예측
지형 및 생태축 의보전	지형·지질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영향유무
	토양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사업시행에 따른 토양환경 변화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의 변화 -사업시행에 따른 경관변화 예측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수환경 의보전	수질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공사시 토사유출에 의한 수환경 영향 - 토사유출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수리·수문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가뭄피해현황 및 농촌용수공급 현황 등을 기초한 물 수지분석
환경 기준의 부합성	대기질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공사시 투입장비 및 토사이동에 의한 비산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 발생 -공사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소음·진동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진동발생 -공사시 건설소음·진동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계획지역	◦공사시 건설폐기물, 폐유 및 생활폐기물 발생, 분뇨 발생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산정 및 적정처리대책 수립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계획지역	◦사업시행 전·후 토지이용계획 및 변화 파악
	인구 및 주거	◦계획지역	◦사업시행 시 인구 변화 파악

3.4 평가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 계획지구의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계획특성과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입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시행 시 직·간접적으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대상지역을 평가범위로 설정하였으며,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함.

〈표 3.4-1〉 전략환경영향평가 범위 및 방법 설정

구분	항목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비고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계획지역	◦계획의 비교 및 입지 측면에서 설정된 대안을 환경적 측면에서 비교·분석	
자연 환경의 보전	1) 생물 다양성·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① 조사내용 ◦식물상 현황 ◦동물상 현황 ◦담수생물상 현황 ◦특이할만한 종분포 및 서식현황 ◦생태자연도 및 생태계현황 ② 조사범위 ◦중점 : 계획지구, 주변 하천 일대 ◦광역 : 계획지구 경계 변경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계획지구 내 ◦계획지구 경계 변경	◦식물상 -식물상 및 식생변화 주요종과 개체에 대한영향 훼손수목발생 및 예측 ◦동물상 -분류군별 사업시행으로 인한 서식처훼손 및 간섭에 따른 영향 예측 및 평가 ◦기타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및 그 서식환경을 파악과 사업 시행으로 이들 중에 미치는 영향과 그 범위를 종합적으로 예측	
	2) 지형 및 생태측 보전	지형·지질 ① 조사내용 ◦지형형상 지질상황, 특이지형 등 검토 ② 조사범위 ◦계획지구 내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절·성도에 의한 지형변화 파악 ◦토사유출 비옥도 유출 사면발생 등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① 조사내용 ◦경관 우수지역 현황 ◦경관 훼손 예상지역 현황 ② 조사범위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현지조사를 통한 주요 조망점 선정(근경·중경·원경)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의 훼손 정도 조망의 변화 ◦조망점별 경관시뮬레이션 실시 ◦경관변화 최소화대책 수립	
	4) 수환경의 보전	수질 및 수리수문 ① 조사내용 ◦하천수에 대한 환경기준 설정항목의 현황농도 ② 조사범위 ◦계획지구 인근 하천 등 수계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상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 ◦비점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 부하량 예측 ◦가뭄피해현황 및 농촌용수공급 현황 등을 기초한 물수지분석, 수리수문변화 및 영향검토	

〈표 계속〉

구분	항목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비고
생활 환경의 안전성	1) 환경기 준 부합성	기상	① 조사내용 ◦계획지구 주변 기상현황 ② 조사범위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인근 기상관측자료 분석·정리	◦기상연보 ◦기상대 또는 필요시 자료분석을 통해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① 조사내용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현황 오염원 면·선·점 파악 ② 조사범위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권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 염도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시행 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누적평가 ◦면오염원 선오염원은 모델링을 통하여 예측	
		토양	① 조사내용 ◦토양오염우려기준 설정항목의 토양 오염도 현황 파악 ② 조사범위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양오염 영향 예측 ◦지장물 차량정비소 등 철거시 토 양오염여부 파악 및 대책 수립	
		소음 ·진동	① 조사내용 ◦소음·진동 현황, 주요발생원조사 ◦정온시설을 포함한 계획지구 주변 시설물 분포현황 확인 ② 조사범위 ◦계획지구 반경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공사시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 동 영향예측 합성소음도 산출식 및 점음원 거리감쇠식 이용	
	2)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① 조사내용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② 조사범위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문헌조사 조사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공종별, 종류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안 ◦분리수거 및 현장 재활용 방안 제시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1) 환경친화 적 토지이용	토지 이용	① 조사내용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편입용지 및 지장물 파악 ② 조사범위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사업시행 전·후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파악	
		인구 및 주거	① 조사내용 ◦인구 및 주거현황 조사 ② 조사범위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자료조사	◦사업시행 시 인구 검토	협의회의견 수렴에 따른 추가항목

3.5 환경현황조사 계획

- 환경질 조사시 계획지역 경계면과 인접한 정온시설을 중심으로 환경질 측정지점을 선정하여 측정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생태계 조사는 개발이 이루어지는 양수장 및 관로를 중심으로 약 0.5km이내에서 조사할 계획임.

〈표 3.5-1〉 환경현황조사 계획

구분		조 사 항 목	조사주기	개소 및 항목수
대기질		◦대기환경기준 등 -SO ₂ , NO ₂ , CO, O ₃ , PM-10, PM-2.5(총 6개항목)	1일(24시간) 1회	◦민북 : 2지점 ◦반송 : 2지점 ◦양성감곡 : 2지점 ◦천안북부 : 2지점
토양		◦토양오염우려기준 항목 등 -Cd, Cu, As, Hg, Pb, Cr ⁺⁶ , Zn, Ni, F, CN, 유기인, PCB, 페놀, 입도, BTEX, TPH(총 16개항목)	1회	◦민북 : 1지점, ◦반송 : 1지점 ◦양성감곡 : 3지점 ◦천안북부 : 2지점
수질	지표수	◦생활환경기준(하천, 호소) 및 사람건강보호기준 등 -유량, 수온, pH, DO, BOD, COD, TOC, SS, T-P, Chl-a, 총대장균군, Cd, As, CN, Hg, 유기인, PCB, Pb, Cr ⁶⁺ , PCE, EC(총 21개항목)	1회	◦민북 : 4지점 ◦반송 : 4지점 ◦양성감곡 : 3지점 ◦천안북부 : 5지점
	지하수	◦먹는 물 수질기준 등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납, 불소, 비소, 수은, 시안, 크롬,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드뮴, 페놀,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색도, ABS, pH, 염소이온, 증발잔류물, 탁도, 황산이온, 구리, 아연, 알루미늄)(총 30개항목)	1회	◦반송 : 1지점
하천저질		◦퇴적물(하천, 호소) 항목별 오염평가기준 등 -COD, 6가크롬, Hg, As, T-N, T-P, 강열감량, 입도분포, Mn(총 9개항목)	1회	◦반송 : 1지점
소음·진동		소음(주간, 야간), 진동(주간, 야간)(총 4개항목)	1회	◦민북 : 4지점 ◦반송 : 3지점 ◦양성감곡 : 4지점 ◦천안북부 : 5지점
동·식물상		육상식물상(식물), 육상동물상(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육수동물상(어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총 8개항목)	1회	-

3.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법

- 본 계획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지 초안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나. 의견수렴 및 반영여부 공개 세부계획

- 1)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시행령 제13조, 14조)
 - 초안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일간신문, 지역신문에 각 1회 이상 공고
 - 공고 후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람
 - 주민은 공람시작일로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개발계획 수립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2)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시행령 제15조, 제16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설명회를 평가서 공람기간 중 1회 실시
(설명회 장소는 추후 협의)
 - 설명회 개최 7일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계획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 공청회는 주민들로부터 별도로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계획임.
- 3)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시행령 제17조)
 - 본 계획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공원, 습지 보호지역, 특별대책지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에 해당되지 않음.
- 4) 주민의견수렴결과 및 반영내용 공개(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시행령 제19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를 14일 이상 공개할 계획임.